

전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단6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운, 이세나

변론 종결2022. 5. 25.

판결 선고2022. 7. 6.

주 문

1. 피고 C는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3,380,618원 및 그 중 30,321,456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22. 4. 2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망 A 사이에 2019.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19. 5. 29. 접수 제18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19 내지 2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A은 2018. 7. 19.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사이에 원고가 망 A의 D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약정서를 담보로 그 무렵 D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 A이 2019. 7. 19. 위 대출 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0. 30. D은행에 40,321,4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 A은 2019. 5. 2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접수 제18431호로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위 나.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4. 11. 현재 33,380,618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은 30,321,456원이며, 원고가 정한 2018. 12. 11. 이후의 손해금율은 연 9%이다.

마. 망 A은 이 사건 소송제기 후인 2021. 7. 1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는 2021. 11. 22. 한정승인심판을, 자녀들인 E와 F은 같은 날 상속포기심판을 각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망 A의 상속인으로서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한편 망 A이 2019. 5. 29.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C는 피고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청구원인: 위 2의 가.항 기재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 2) 망 A의 무자력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망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168,928,836원을 포함하여 1,035,646,836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위 적극재산보다 적은 980,007,124원이었던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망 A의 무자력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위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의 2019년경 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611,708,000원이었다가 2021년경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333,330,000원으로 278,378,000원 감가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도 피고 C가 2020. 4. 2.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세를 알아보니 8,000만 원에 내 놓아도 매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168,928,836원이 아닌 88,928,836원(= 168,928,836원 - 8,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역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위 ④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 부분의 '8,000만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준범

별지